

환경농업육성법 제정 Sustainable Agriculture Upbringing Law

박 병 태*
Park, Byong-tae

1. 머리말

우리나라 환경농업을 육성,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「환경농업육성법」이 '97. 11. 18.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우리나라 환경농업에 새로운 장이 마련되고 환경농업정책의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게 되었다.

이 법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발의하여 제정된 것으로, '96. 7. 16. 이길재 의원 외 30인이 발의한 “환경보전형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”과 '97. 7. 8. 이강두, 이우재, 김광원 의원 외 38인이 발의한 “환경농업육성법안”을 절충하여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대안을 작성하여 위원회 전체안으로 발의하여 제정하게 된 것이다.

이 법안이 제정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 환경농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며, 특히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증대 및 환경농업의 육성과 그린라운드 등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농업 문제에 적극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.

2. 환경농업육성법의 내용

가. 주요내용

1) 환경농업의 개념

- 농약안전사용기준과 작물별 시비기준량을 준수하고,
- 가축사료첨가제 사용 등 화학재료 사용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며,
- 축산분뇨의 적절한 처리와 재활용으로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축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함

2) 농업환경의 보전 및 개선 대책 적극 추진

-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대책과 농업 자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의 개선시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고,
- 이를 위하여 농업자원 및 농업환경의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토록 함

〈조사사항〉

- 농경지의 비옥도, 중금속, 농약성분, 토양 미생물 등의 변동 사항
- 농업용수의 수질
- 농약·비료 등 농업투입재의 사용실태
- 농업의 수자원 함양, 토양보전 등 공익

* 농림부 농업공무원 교육원

적 기능 실태 등

산물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게 하였음

3) 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중·장기 계획

수립추진

- 환경농업을 체계적·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부 장관은 매 5년마다 환경농업육성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농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, 육성계획 중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은 환경보전위원회(환경정책기본법 제36조)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,
- 시·도지사 및 시장, 군수는 환경농업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음

〈환경농업 정책방향〉

- 농약, 비료, 축산분뇨 등 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원 경감
- 농경지 토양, 농업용수 등 농업환경의 유지, 개량
- 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육성·지원

4) 환경농업발전위원회 설치·운영

- 환경농업육성계획 등 환경농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환경농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,
- 위원회는 민·관·학계의 전문가 25인 이내로 구성도록 하였음
- 환경부,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 공무원 참여
- 심의사항 : 환경농업육성계획, 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, 환경농업의 생산성 증대방안, 농업을 환경친화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각종 방안 등

5) 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지원

- 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환경농산물 생산자, 생산자 단체 및 유통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,
- 환경농산물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환경농

6) 환경농산물 유통질서 확립

- 환경농산물(일반 환경농산물 제외)은 신고하지 않고는 환경농산물 표시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도록 하였으며,
- 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판매과정에서 수거·조사하여 위반자는 처벌하도록 하여 환경농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였음

〈환경농산물 분류〉

- 일반 환경농산물 : 농약·비료 사용기준 준수
- 유기농산물 : 3년 이상 무농약·무화학 비료
- 전환기 유기농산물 : 3년 미만 무농약·무화학 비료
- 무농약 농산물 : 무농약, 비료는 기준량 준수
- 저농약 농산물 : 일반 재배의 1/2 농약 사용

7) 환경농업기술 개발 및 교육, 홍보

환경농업의 저변확대와 기반구축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농업기술의 연구개발, 보급, 교육훈련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음

8) 환경농업 관련 국제협력

날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는 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, 환경농업의 기준 및 목표를 수립하므로써 OECD, 그린라운드 등 국제동향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음

나. 환경농업육성법 주요골자

- 1) 농업생산에 있어서 농약·비료 및 가축사

- 료첨가제 등 화학자료의 기준사용량을 준수하고, 축산분뇨 등의 적절한 처리를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며 안전한 농축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“환경농업”으로 규정하였음(제2조)
- 2) 농림부 장관은 매 5년마다 환경농업 육성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농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, 육성계획 중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은 환경보전위원회(환경정책기준법 제36조)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는 실천계획을 수립·추진하도록 함(제6조 내지 제7조)
 - 3) 환경농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환경농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함(제8조)
 - 4)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며, 농업 자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 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하여 농업환경의 실태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함(제9조 내지 제12조)
 - 5) 환경농업의 기반구축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·보급, 교육훈련 및 홍보를 적극 추진 토록 함(제13조 내지 제15조)
 - 6) 환경농산물을 일반 환경농산물·유기농산물·전환기 유기농산물·무농약 농산물·저

농약 농산물 5종으로 구분하고, 환경농산물(일반 환경농산물 제외)을 생산하여 표시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하게 하며, 시판 품에 대해 조사함(제16조 내지 제18조)

- 7) 환경농산물의 생산자,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, 환경농산물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환경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함(제19조 내지 제20조)
- 8) 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, 환경농업의 기준 및 목표를 수립하도록 함(제21조 내지 제22조)

약력

박병태



1982.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졸업
1992. 서울대학교 농공학과 농학석사
1996. 농림부 토목사무관
현재 농림부 농업공무원 교육원 교관
KCID 편집·학술분과위원